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11
----------	-------

제출년월일 : 2024. 2. 21.
발의자 : 이혜경 의원 등 7 명

1. 제안이유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악취의 발생 저감 및 방지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책무 (안 제3조 ~ 제5조)
- 지원 (안 제6조)
- 실태조사 (안 제7조)
- 지도·감독, 홍보 (안 제8조 ~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7. 조례안 예고결과 : 의견없음

- 조례안 예고기간 : 2024. 2. 7. ~ 2024. 2. 14.(7일간)

【붙임1】 제정조례안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의 발생을 저감 및 방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관련 정책에 대하여 안산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이혜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8)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411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11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상위법령의 용어 규정과 동일한 용어의 정의를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표현방식 및 이해에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고, 보조금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함.

주요골자

- “악취” 및 “악취배출시설”의 정의 표현방식 수정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를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로 수정
(안 제6조제1항)
-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제2항)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를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 략)	2. (원안과 같음)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 .
1. ~ 3. (생 략)	1. ~ 3. (원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